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손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13
----------	-------

발의연월일 : 2019. 11. 5.

발의자 : 손금주 · 손혜원 · 황주홍

김성찬 · 이양수 · 경대수

윤준호 · 김태흠 · 강석진

박주현 · 정운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24조 단서 중 “경과한”을 각각 “지난”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납부기간 경과”를 “납부기간이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경과하여”를 “지나”로 한다.

제49조제1항 단서 중 “경과하였을”을 “지났을”로 한다.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과한”을 각각 “지난”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2호 중 “납부기간 경과”를 “납부기간이 지난”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경과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89조제2호 중 “표찰(標札)”을 “표지판”으로 한다.

제98조제3항 중 “제140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을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11조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22조제4항 중 “요구에 응하지”를 “요구를 따르지”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5호 중 “소환에 응하지”를 “소환을 따르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보호 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지난

지난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
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 제한 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자가 보호 품

<p>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p>	<p>----- -----.</p>
<p>1. 추가납부기간이 <u>경과한</u>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2. 추가납부기간이 <u>경과한</u> 날부터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p>	<p>1. ----- <u>지난</u> ----- ----- 2. ----- <u>지난</u> ----- -----</p>
<p>⑤ · ⑥ (생 략)</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54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p>	<p>제54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p>
<p>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p>	<p>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p>
<p>1. (생 략) 2. 제47조제1항에 따라 <u>납부기간</u> <u>경과</u> 후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p>	<p>1. (현행과 같음) 2. ----- <u>납부기간이 지난</u> ----- -----</p>
<p>3. ~ 5. (생 략) ③ ~ ⑤ (생 략)</p>	<p>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p>	<p>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p>
<p>① (생 략) ②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u>경과하지</u> 아니한 보호품종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① (현행과 같음) ② ----- ----- <u>지나지</u> ----- ----- -----.</p>
<p>③ ~ ⑥ (생 략)</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기간이 <u>경과한</u>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p>	<p>-----지난----- ----- ----- -----. -----.</p>
<p>제112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생 략)</p>	<p>제112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u>경과한</u>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 -----지난----- ----- -----. -----.</p>
<p>③ ~ ⑤ (생 략)</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22조(출석의 요구) ① ~ ③ (생 략)</p>	<p>제122조(출석의 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u>요구에 응하지</u>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④ ----- ----- -----요구를 따 르지----- -----.</p>
<p>제1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137조(과태료) ① ----- ----- ----- -----.</p>
<p>1. ~ 4. (생 략) 5.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p>	<p>1. ~ 4. (현행과 같음) 5. ----- -----.</p>

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u>소환에 응하지</u>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 ----- ----- ----- <u>소환을 따르지</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